

의안번호	2213669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30.
추 계 번호	25F5660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항공기 부분품 관세의 단계적 감면을 인하 규정 적용기한 5년 순연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항공기 부분품¹⁾ 중 TCA 품목²⁾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감면을 인하 규정을 5년 순연할 경우 관세는 2026년 226억원, 2034년 296억원 등 2026년에서 2034년까지 9년간 총 6,486억원(연평균 72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관세, 2026~203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6항)	-226	-468	-726	-1,001	-1,294

구분	2031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
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6항)	-1,071	-830	-572	-296	-6,486	-72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9조제6항 (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)	-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)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율의 단계적 인하 삭제 및 전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말까지 100%, 2026년부터 2029년 말까지 20%p씩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 축소→ (개정안) 2030년 말까지 100%, 2031년부터 2034년까지 20%p씩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 축소	

1) 항공기 제조 및 수리에 투입되는 원재료·부분품

2)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」 대상 물품 중 기확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.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,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)은 항공기 부품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을 철폐하는 협정이며,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9조제6항 (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이후 수입분부터 개정 감면율이 적용됨을 가정
- 2024년 TCA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감면 미적용시의 품목별 관세 부과액 추정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은 증가 추세이므로 가장 최근인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
 -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된 점에 기인
- 2024년 이후 항공기 운항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수입액이 증가하여 관세 감면액 또한 증가함을 가정
 -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항공수요는 2025년에서 2044년까지 매년 3.4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³⁾됨에 따라 항공기 수리에 따르는 부분품 수요도 이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
- FTA 활용 증가 등에 따른 관세 감면 효과는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

3) IATA 20-Year Passenger Forecast (2024~2044), IATA, 2024.6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제조·수리 용도로 항공기 부분품·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
 - TCA 대상 품목의 경우 2025년까지 100% 감면, 이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율 20%p씩 축소하여 2030년은 관세 감면 폐지
- (감면실적) 2024년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,322억원
 - 이 중 TCA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1,059억원

[표 2]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

	2020	2021	2022	2023	2024
TCA 품목	373	383	497	797	1,059
비 TCA 품목	168	130	188	229	263
(중소기업)	39	30	45	77	105
(중소기업 제외)	129	100	143	152	158

자료: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

- 개정안은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) 대상 품목에 포함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단계적 일몰일정을 5년 순연하려는 것임
 - 현행은 2025년까지 100% 감면되다가 2026년부터 20%p씩 감면율이 축소되어 2030년에는 감면율 미적용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TCA 대상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율 변화

(단위: %, %p)

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
현행(A)	80	60	40	20	0	0	0	0	0
개정안(B)	100	100	100	100	100	80	60	40	20
차이(B-A)	20	40	60	80	100	80	60	40	20

□ 2024년 관세 감면액을 기준으로 향후 항공수요 전망에 따라 감면이전 관세 부과액 추정

- 2024~2044년 전세계 항공수요 증가율(전망): 연 3.4%

[표 4]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부과액(감면 이전) 전망

(단위: %, 억원)

	2024 (기준연도)	2025	2026	2027	2028	2029
TCA품목	1,059	1,095	1,132	1,171	1,211	1,252
	2030	2031	2032	2033	2034	
TCA품목	1,294	1,338	1,384	1,431	1,479	

자료: 항공수요 전망은 IATA 20-Year Passenger Forecast (2024~2044), IATA, 2024.6.에 따름

□ 세수효과는 현행법에 따른 2026~2034년 감면 이전의 관세부과 전망액에 품목별 관세감면율 상승분을 적용한 값으로 감면율 증가분을 산출하여 추정

[표 5]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상승에 따른 감면액 증가 효과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TCA 품목	관세부과액	1,132	1,171	1,211	1,252	1,294
	감면율 상승분(%p)	20	40	60	80	100
	감면액 증가분	226	468	726	1,001	1,294
		2031	2032	2033	2034	
TCA 품목	관세부과액	1,338	1,384	1,431	1,479	
	감면율 상승분(%p)	80	60	40	20	
	감면액 증가분	1,071	830	572	296	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항공기 부분품 중 TCA 품목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감면을 인하 규정을 5년 순연할 경우 관세는 2026년 226억원, 2034년 296억원 등 2026년에서 2034년까지 9년간 총 6,486억원(연평균 72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관세, 2026~203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6항)	-226	-468	-726	-1,001	-1,294

구분	2031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
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6항)	-1,071	-830	-572	-296	-6,486	-72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